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7호
Dec. 2023

보험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

- 일본뇌염의 상해사고 인정 여부 (2023-2호)-

1. 사안의 개요

-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과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운전자보험1601 계약을 기본계약으로 체결하며,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 특별약관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세균수막염, 림프관종 등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9.10.11. 일본뇌염에 대한 확진판정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폐렴 및 패혈증 증세로 2021.12.4. 사망함(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 신청인은 2022.2.2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2.4.8.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일본뇌염은 질병사고로 판단'된다는 취지에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른 입원비의 지급을 거절함
-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일본뇌염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며, 주치의가 피보험자의 고혈압·지방간 등 소견이 일본뇌염 발병 및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소견하였으므로, 일본뇌염은 피보험자의 질병·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에 기인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특약에 따른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위원회의 판단

- 이 사건 약관은 '상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발생할 것, 그리고 ②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단순히 뇌염모기에게 물리는 상황은 돌발적으로 급격하게, 피보험자의 고의 없이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며,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 등과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로 유입되는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 그러나 뇌염모기에 물렸을 경우 물린 부위의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치유가 가능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별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보험자가 신체에 손상, 즉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나아가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떨림,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신체의 손상에 해당함. 또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도 인정됨. 그러나,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감염된 250명 중 1명의 비율로 뇌에 퍼지는 점, 일본뇌염은 소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혹은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 남자에게 약간 더 호발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의 체내에 유입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한 것은 연령·성별·체질 등 면역력 저하를 야기하는 내재적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일본뇌염은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보험자의 일본뇌염 감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시사점

-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①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발생할 것 ②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보험약관상 상해의 해석과 관련하여, 단순히 피보험자의 체내에 유입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뇌염으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령·성별·체질 등 면역력 저하를 야기하는 내재적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보험자의 일본뇌염 감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